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규정

지현초등학교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2. 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10일로 한다.
3. 학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무단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5.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운영 단위 규정은 1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4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출발일 4시간+도착일4시간=1일)
8.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9. 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기타 체험

활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0.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11. 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10일전 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신청서 결재	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책임이 있는 부장전결, 교감 전결, 학교장 결재 등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b>결과 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b>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보고서 제출 쪽수는 1~2쪽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양식을 사용한다.	홈페이지 공지 사항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3년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2. 위 규칙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